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 27 선고 2019가단566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경광

변론 종결 2020. 12. 23.

판결 선고 2021.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각 2/9 지분 만큼 취소한다. 피고 B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9. 11. 14. 접수 제39582호, 같은 등기과
2019. 11. 13. 접수 제20360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양도

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C이 신용카드 이용대금, 카드 대출 채무 등을 연체하자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352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6. 6. 22. "C은 원고에게 25,577,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제3호증).

2) 소외 회사는 2018. 7. 5. 원고에게 위 판결로 확정된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8. 8. 27.경 C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1) C의 부친인 소외 E이 2019. 5. 25.경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이라 한다), C의 법정 상속분은 2/9이다.

2) 그런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망인 소유의 27438/406661 지분 및 망인의 단독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9. 5.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11. 14.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지분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C의 무자력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일(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인 2019. 5. 25. 당시 C은 채무 초과와 무자력 상태였고,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외에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C의 상속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C은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 등 재정지원을 많이 받았는바 이와 같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 C은 1996. 9. 1.경부터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폐차 처리업을 영위하다가 2016. 11. 10. 이를 폐업하였고, 2009. 9. 17.부터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물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 1. 26. 폐업하였다(을 제2호증).
-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가 2016. 11.경 폐차 처리업을 폐업하기 전인 같은 해 4. 1. 금융기관으로부터 7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70,912,735원으로 피고의 여러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해 주었다(을 제1, 4호증).
- 3) 또한 을 제3, 6호증 및 이 법원의 각 금융자료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10. 12. 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C의 H은행 계좌(을 제3호증, I)로 362,045,943원을 송금하였고, 망인은 2010. 10. 14. C의 H행 계좌(J)로 1억 원, 같은 해 11. 29. C의 다른 H은행 계좌(K)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 4) 위 대위변제금 및 송금액 합계는 562,958,678원(= 70,912,735원 + 362,045,943원 +

100,000,000원 + 30,000,000원)이다. 원고는 이를 망인이 C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C과 망인 사이에 차용증이나 정기적 이자 지급 내역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과 C의 부자관계, 당시 C이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던 사정, 망인의 대위변제에도 불구하고 C이 결국 사업을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은 망인의 C에 대한 대여금이라기보다는 재정적 지원금에 가깝다고 보인다.

5) 한편, 갑 제8호증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2020. 11. 6.자 금융거래 제출명령 결과를 종합하면, C은 망인에게 2008. 5. 22.부터 2016. 2. 1.까지 186,129,472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송금 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11. 1. 13.부터 2015. 12. 31.까지 송금 부분은 월 150만 원 상당의 의 고정적, 정기적 송금인 점, 이는 망인이 같은 기간 동안 C에게 송금한 금원의 다과나 횟수 등을 불문하고 거의 변동이 없는 점, 이 정기적 송금도 C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는 C이 부친에 대한 생활비 보조 명목의 금원을 고정적,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가액이 아래와 같이 189,190,160원임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바탕으로 간주상속재산 및 C의 특별수익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1	1,058,805	27438/40661	714,480
2	18,629,730	1	18,629,730
3	3,270,000	1	3,270,000
4	23,027,290	1	23,027,290
5	7,548,660	1	7,548,660
6	136,000,000	1	136,000,000
합계	189,190,160)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목적물 가액이 21,059,387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2020. 11. 24.자 준비서면 제2면), 이는 원고가 계산한 소가를 목적물 가액으로 착오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C의 특별수익액 : 376,829,206원

(= 망인의 C에 대한 재정지원액 562,958,678원 - C의 망인에 대한 송금액 186,129,472원)

○ 간주상속재산 : 566,019,366원

(= 상속재산 가액 189,190,160 + C의 특별수익액 376,829,206원)

○ 간주상속재산에 대한 C의 법정 상속분액 : 125,782,081원

(= 566,019,366원 × 2/9)

결국 C의 특별수익액이 간주상속재산에 대한 C의 법정 상속분액보다 큼이 계산상 명백한바, C에게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C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지성

별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의 목적물 가액이 21,059,387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2020. 11. 24.자 준비서면 제2면), 이는 원고가 계산한 소가를 목적물 가액으로 착오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